자 교 육 통 신 제20-35호 교 육 통 신 크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세부 운영 기준



장계초등학교 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전세계적 유행 상태인 코로나-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을 위한 우리학교 출결관리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
자녀와 함께 잘 읽어보시고 등교수업 출결관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□ 기본원칙

- O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- 코로나19로 인해 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(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하고, 워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- □ 등교증지학생 : 특정 학생이「학교보건법」제8조,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 석인정결석' 처리
 - ※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
【 등교중지 대상 학생 】

대상	등교중지 기간	등교 재개 요건	출결증빙 자료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■ 보건당국에서 판단	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의사학생	14일	■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한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	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 결과지(보건소 발부)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■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 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	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(보건소 발부)
자가격리학생	14일	■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 과 음성일 경우	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
	가족(동거인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■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	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
유증상학생	증상발현 [*] 후 3~4일 * 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	■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 (☎지역번호+120 또는 ☎ 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 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 락 후 등교	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, 진료확인서 등

<뒷면>

- □ 고위험군학생: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 환(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 저하자 등) 및 장애*를 가진 학생의 경우, '출석인정 결석**' 또는 '질병결석***' 처리
 - * 보건복지부 '장애복지카드' 소지자(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)에 한함
 - 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- **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관심, 주의"단계이며, 학부모(보호자)가 학교에 사전 연락(전화 또는 문자 등)한 경우
 - 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(기저질환 및 민감군)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 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 할 수 있음
 - ※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- ☐ 기타 미등교학생: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'기타결석*' 처리
 - 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단계이며 학교장의 시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
 - ※ "심각, 경계"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 시 '출석인정 결석' 처리 가능
 - ※ (유의사항)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

2020년 5월 18일

장계초등학교장